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3/2564 호

전기 자동차 생산, 전기 자동차 부품 및 장비 투자 촉진 정책

모든 사업범주의 정책을 포괄하는 전기 자동차 생산에 대한 투자 촉진에 대하여 태국을 전기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로서의 발돋움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서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 18항, 31항, 31/1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발표함

1.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호 4번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건 권리 및 혜택에 대한 추가 내용을 적용함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4.24 전기자동차 생산사업 Battery Electric Vehicle (B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과 Hybrid Electric Vehicle (HEV)	1. 다음으로 구성된 내용들(Package)을 계획제출해야하는데 이는 BEV 전기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나 자체적으로 전기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실시, 혹은 다른 제조업체의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을 통한 1-3년차의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조달에 대한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 사용한 배터리 관리 및 원자재 공급 업체 개발 계획 또는 태국 국적을 가진(Local Suppliers)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품 기술 및 기술 지원등을 포함해야함 2.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제품은 다음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함 2.1 UN R100 지침에 따른 전력 전송 시스템의 안전 기준 준수 2.2 예방 안전 기준(Active Safety)으로서의 ABS 및 ESC(UN R13H w/ABS&ESC)가 있어야함 2.3 전면 및 측면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시 승객 보호 기준(UN R94 & UN R95)가 있어야함 2.4 오염 표준 수준 Euro 5 이상(UN R83) (전기 자동차 전용 HEV 및 PHEV) 2.5 여러종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따르는것으로 예를들면 국토 교통부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3. 승인을 받은 모든 유형의 전기 자동차 생산은 그 과정에서 전기 배터리 Module에 대한 생산이 요구되	B1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어지며 투자촉진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작을 해야함 4. Traction Motor 시스템이나 내장 배터리(BMS), 그리고 주행 제어 (DCU) 시스템중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주요 부품에 대한 생산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전기 자동차 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함 5. HEV 및 PHEV 차량의 경우 추가 부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는 4.8.3 항목에 속한것중 2가지이상의 전기 자동차용 부품 및 장비 생산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전기 자동차 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함 6. 기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시간을 연장할수없음 7. 투자비용이 토지비용과 순환 자본을 제외한 규모의 BEV 자동차 생산 및 주요 부품 생산(전기 배터리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제어 시스템 운전(DCU))같은 종합 프로젝트(Package)의 경우 공급자(Suppliers)는 총 50억 바트이상의 권리와 혜택을 다음과 같이 받을수 있음 7.1 PHEV 자동차 제품의 경우 7.2 기술 연구 개발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수있는 지정된 기준내의 혁신정책으로서 BEV 차량 제품에 대한 권리를 능력 개발을 위한 추가 혜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8. 투자비용이 토지비용과 순환 자본을 제외한 규모의 BEV 자동차 생산 및 주요 부품 생산(전기 배터리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제어 시스템 운전(DCU))같은 종합 프로젝트(Package)의 경우 공급자(Suppliers)는 총 50억 바트이상의 권리와 혜택을 다음과 같이 받을수 있음 8.1 PHEV 차량 제품의 경우 8.2 BEV 차량 제품의 경우 <u>추가 권리와 혜택</u> (1) BEV차량이 2022년까지 생산된 경우 2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2) BEV차량용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요구되는 전기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 자동차 생산을 시작후 3년 이내에 전기 자동차 부품 종류당 1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대상 혜택	A4 A2 A4 A4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3) BEV차량에 대한 실제 생산(Actual Production) 이 연간 10,000개 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을 시작후 3년 이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1년의 법인세 면제 혜택 부여 (4) 지정된 기준에 맞는 기술과 혁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권리 및 혜택을 신청할수 있음 9. 산업을 위한 지역 개발에는 추가 권리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10. 환경친화적인 자동차(Eco-Car)에 대해 투자촉진을 받아 생산하는 생산자의 경우 프로젝트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 실제 생산(Actual Production)에 대한 크기를 통해 규모를 측정할수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자동차중에서 국내 시장용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국제 표준에 따른 환경적 특성에 명시된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함	
4.25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생산사업	1. 다음으로 구성된 내용들(Package)을 계획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전기 오토바이 생산 프로젝트나 자체적으로 전기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실시, 혹은 다른 제조업체의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을 통한 1-3년차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 및 조달에 대한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 사용한 배터리 관리 및 원자재 공급업체 개발 계획이나 전기 배터리 스위칭 스테이션 관리 계획 또는 태국 국적을 가진(Local Suppliers)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품 기술 및 기술 지원등을 포함해야함 2.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오토바이 및 제품을 생산해야하며 투자촉진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3년 이내에 생산이 시작되어야함 3.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오토바이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사용가능하며 다음의 표준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함 3.1 동력 전달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으로 UN R136 규정을 따름 3.2 타이어는 태국 산업 표준 기준 2720이나 UN R75의 표준 기준에 따름 3.3 브레이크 시스템의 경우 ABS나 CBS, 또는 UN R78의 표준 기준에 따름 3.4 여러종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따르는것	A4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으로 예를들면 국토 교통부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4. 기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시간을 연장할수없음 5. <u>추가 권리 및 혜택</u> 5.1 전기 오토바이 생산이 2022년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1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5.2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기 배터리 Module에 대한 생산이 시작될 경우 1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5.3 그 외에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나 운전 제어 시스템(DCU)같은 주요 부품에 대한 추가 생산이 있는 경우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종류에 대해 1가지씩 추가적으로 1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5.4 지정된 기준에 맞는 기술과 혁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권리 및 혜택을 신청할수 있음 6. 산업을 위한 지역 개발에는 추가 권리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4.26 전기 삼륜 자동차 배터리 생산사업	1. 다음으로 구성된 내용들(Package)을 계획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전기 삼륜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나 자체적으로 전기 삼륜 자동차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실시, 혹은 다른 제조업체의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을 통한 1-3년차의 전기 삼륜 자동차 생산 및 조달에 대한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 사용한 배터리 관리 및 원자재 공급 업체 개발 계획 또는 태국 국적을 가진(Local Suppliers)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품 기술 및 기술 지원등을 포함해야함 2.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삼륜 자동차 및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투자촉진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3년 이내에 생산이 시작되어야함 3.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삼륜 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다음의 표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함 3.1 동력 전달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으로 UN R136 규정을 따름 3.2 여러종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따르는것으로 예를들면 국토 교통부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A4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요구하는 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4. 기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시간을 연장할수없음 5. <u>추가 권리 및 혜택</u> 5.1 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기 배터리 Module에 대한 생산이 시작될 경우 1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5.2 그 외에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나 운전 제어 시스템(DCU)같은 주요 부품에 대한 추가 생산이 있는 경우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종류에 대해 1가지씩 법인세 면제 혜택 5.3 지정된 기준에 맞는 기술과 혁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권리 및 혜택을 신청할수 있음 6. 산업을 위한 지역 개발에는 추가 권리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4.27 전기 버스 및 트럭 배터리 생산사업	1. 다음으로 구성된 내용들(Package)을 계획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전기 버스나 트럭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나 자체적으로 전기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 실시, 혹은 다른 제조업체의 기계 수입 및 설치 계획을 통한 1-3년차의 전기 버스 및 전기 트럭 배터리 생산 및 조달에 대한 계획, 전기 충전소 개발 계획, 사용한 배터리 관리 및 원자재 공급 업체 개발 계획 또는 태국 국적을 가진(Local Suppliers)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품 기술 및 기술 지원등을 포함해야함 2.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버스 및 트럭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투자촉진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3년 이내에 생산이 시작되어야함 3.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버스 및 트럭의 국내 판매는 다음의 표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3.1 동력 전달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으로 UN R100 규정을 따름 3.2 여러종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예를들면 국토 교통부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A4

활동범주	조건	권리와 혜택
	4. 기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시간을 연장할수없음 5. <u>추가 권리 및 혜택</u> 5.1 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기 배터리 Module에 대한 생산이 시작될 경우 1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5.2 그 외에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나 운전 제어 시스템(DCU)같은 주요 부품에 대한 추가 생산이 있는 경우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종류에 대해 1가지씩 1년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 5.3 지정된 기준에 맞는 기술과 혁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권리 및 혜택을 신청할수 있음 6. 산업을 위한 지역 개발에는 추가 권리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2.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호에 명시되어있는 활동범주중에 4번 항목의 활동범주 4.8.3과 4.9 그리고 5번 항목의 활동범주 5.2.6 목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대신 적용함

활동범주	조건	권리 및 혜택
4.8.3 전기 자동차용 부품 및 장비 생산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을 포함함		
4.8.3.1 배터리 생산사업	1. Cell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	A1
	2. Module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	A2
	3. Pack Assembly 과정이 있는 경우	A3
4.8.3.2 Traction Motor 생산사업		A2
4.8.3.3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자동차의 공기조절 장치로 공기압축기 같은 장치를 포함한 생산사업		A2
4.8.3.4 배터리 생산 관리 시스템(BMS) 생산 사업		A2
4.8.3.5 운전 제어 시스템(DCU) 생산사업(		A2

활동범주	조건	권리 및 혜택
4.8.3.6 On-Board Charger 생산 사업		A2
4.8.3.7 전기 압축 장비 제조로 Wall box 소켓등을 포함		A2
4.8.3.8 DC/DC Converter 생산 사업		A2
4.8.3.9 Inverter 생산 사업		A2
4.8.3.10 Portable Electronic vehicle charger 생산 사업		A2
4.8.3.11 Electronic Circuit Breaker 생산 사업		A2
4.8.3.12 인공지능 전기 압축발전 사업 (EV Smart Charging System)		A2
4.8.3.13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의 전 방 및 후방 빔 생산사업		A2
4.8.3.14 고압 전선 생산 사업(High Voltage Harness)		A2
4.8.3.15 Reduction Gear 생산 사업		A2
4.8.3.16 Battery Cooling System 생산 사업		A2
4.8.3.17 Regenerative breaking 생산 사업		A2
4.9 선박 연결 또는 수리 사업	시행일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ISO 14000 기준이 맞는 품질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함	A2
4.9.1 500총톤 이상의 선박 연결 또는 수리 사업		A2
4.9.2 500총톤 이하의 선박 연결 또는 수리 사업(금속 또는 유리 섬유 보트로 엔진과 전원 시스템 및 장비가 갖추어있는것)		A2
5.2.6 고용량 전기 에너지 저장 장비 생산 사업(High Energy Density Storage)	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Specific Power와 충전주기수에 대한 요구조건이 맞아야함	
5.2.6.1 배터리 생산 사업 (High Energy Density Battery)		A1
		A2
		A3
5.2.6.2 Supercapacitor 생산사업	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Specific Power와 충전주기수에 대한 요구조건이 맞아야함	A2

3. 활동범주 4.8.3.1 배터리 생산 사업의 Cell 공정이 있는 경우와 Module 공정이 있는 경우 및 활동범주 5.2.6.1 배터리 생산 사업(High Energy Density Battery)의 Cell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와 Module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재료나 원자재의 경우 재료 및 원자재 관세 감면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30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각 비율당 90%를 2년간 부여하며 각 주기당 1년씩 승인 여부를 실시, 그리고 이는 처음 원자재를 수입해온 날을 기준으로 규정함
4. 투자촉진을 받는자는 활동범주 4.8.3.1 배터리 생산 사업의 Cell 공정이 있는 경우와 Module 공정이 있는 경우 및 활동범주 5.2.6.1 배터리 생산 사업(High Energy Density Battery)의 Cell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와 Module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재료나 원자재의 경우 재료 및 원자재 관세 감면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30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각 비율당 90%를 2년간 부여하며 각 주기당 1년씩 승인 여부를 실시, 그리고 이는 처음 원자재를 수입해온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는것을 따르는것으로 규정함

2020년 11월 4일부터 적용

2021년 1월 13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